

『우크라이나,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정 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6.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418
통보국	우크라이나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024)	477 (2024)
작성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8
불임. 규제 참고자료	8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는 유럽연합의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8*에 기반하여 작성한 신규 기술 규정 초안을 2025년 5월 20일 통보하였음

* 직접판매기능 냉장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을 정하는 EU 위임규정

- (규제요지)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기기에 대한 라벨 및 정보 제공 의무, 정보 표시의 범위, 제품 성능 정보에 필요한 측정 · 계산 방법 등을 규정

TBT 통보번호	▪ UKR/342	통보일	▪ 2025-05-20
		고시일	▪ 해당 없음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명령 초안 ▪ Draft Order of the 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 of Ukraine "On Approval of the Technical Regulation for Energy Labeling of Refrigerating Appliances with a Direct Sales Function"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영토개발부 ▪ Ministry for Development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라벨링, 적합성평가 		
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초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결정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07월 19일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09월 01일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규정 발효일 이전에 출시된 제품의 시장 출시는 금지·제한하지 아니함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판매 기능 냉장기기 ▪ Refrigerating appliances with a direct sales function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를 주전원으로 작동하는 직접 판매 기능 냉장기기 (식품 이외의 상품을 냉각하기 위해 판매되는 기기 포함) ▪ 적용 예외 범위는 본문 참조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477	HS Code	▪ 8418

2

제정 세부내용

□ 주요 내용

- 본 우크라이나 기술 규정은 유럽연합(EU)의 다음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8(이하, Regulation (EU) 2019/2018)
 - EU 규제 대비 공통점 및 차이점
 - 기술 규정의 다음 주요 내용은 EU 규제를 전반적으로 인용하였음
 - 공급자, 판매자,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대상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음
 - 제품 정보 시트는 부속서에 명시된 검사·계산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 주무 기관은 부속서에 명시된 검증 절차로 시장감시 점검을 수행함
 - 기술적 사항들은 EU 규제와 거의 동일하지만, 라벨링 양식 및 참조 규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 상기 차이는 유럽연합(EU) 정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유럽 규제에 대한 정치적·법적 관계 구조의 차이에 기인함

□ 통보문 문서의 구성

- 본 통보문은 도합 11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
 - 실질적인 기술 규정은 ‘규제원문 (2)’문서에서 명시하며, 라벨링 및 정보 제공, 기술 문서, 시장 감시 검증 절차 등 규범적 정보 및/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3) ~ (11)에서 다루고 있음

* UKR342_규제원문(1) ~ (11)

[표 1] 통보문 규제원문의 문서 구성

문서 번호	문서 주요 내용	문서 성격
규제원문 (1)	본 기술 규정 제정안의 승인에 대한 내각 결의안 고시	개정 고시 문서
규제원문 (2)	기술 규정 본문 전문	기술 규정 본문
규제원문 (3)	기술 규정의 부속서 I (부속서의 용어)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4)	기술 규정의 부속서 II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술 규정 부속서

문서 번호	문서 주요 내용	문서 성격
규제원문 (5)	기술 규정의 부속서 III (에너지 라벨의 양식)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6)	기술 규정의 부속서 IV (검사 및 계산 방법)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7)	기술 규정의 부속서 V (제품 정보 시트)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8)	기술 규정의 부속서 VI (기술 문서)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9)	기술 규정의 부속서 VII (시각적 광고, 기술 홍보물 또는 기타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판매를 제외한 원거리 판매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10)	기술 규정의 부속서 VIII (인터넷을 통한 원거리 판매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	기술 규정 부속서
규제원문 (11)	기술 규정의 부속서 IX (시장 감시 목적의 검증 절차)	기술 규정 부속서

□ 세부 내용

○ 적용 대상 범위 (유럽 규제 대비 차이점을 분석함)

- 적용 제외 대상 중 코너 캐비닛에 대한 명칭 수정
 - (EU 규제) 코너 캐비닛
 - (본 기술 규정) 코너 캐비닛/곡선형 전면을 가진 진열장 및 회전식 캐비닛*

* 해당 제품에 대한 정의는 Regulation (EU) 2019/2018에서 코너 캐비닛의 정의와 동일함

[표 2] 규제 적용 대상 범위 (규제원문 (2)의 1조)

조항	본 기술 규정 (UKR/342)
1조	<p>1. 본 기술 규정은 <u>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u>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및 추가 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하며, 식품 이외의 상품을 냉각하기 위해 판매되는 기기(refrigeration of items other than foodstuffs)도 포함한다.</p> <p>본 기술 규정은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하여,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8 (2019년 3월 11일 제정)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U) 2017/1369를 보완하는 규정이다.</p> <p>2. 본 기술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p> <p>(a) 전기 이외의 에너지원만으로 작동하는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p> <p>(b)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지 않는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p> <p>(c) 원격 캐비닛이 연결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원격 구성요소(예: 응축기 유닛,</p>

조항	본 기술 규정 (UKR/342)
	<p>압축기 또는 수냉식 응축 유닛)</p> <p>(d) 식품 가공용 직접 판매 기능 냉장 기기</p> <p>(e) 의약품 또는 과학적 샘플 보관을 위해 특별히 시험 및 승인된 직접 판매 기능 냉장 기기</p> <p>(f) 살아있는 식품(예: 살아있는 생선 및 조개류)의 판매 및 전시용 직접 판매 기능 냉장 기기(예: 냉장 수족관, 수조 포함)</p> <p>(g) 샐러드 진열장</p> <p>(h) 저온 작동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저장 공간이 통합된 수평형 서브 오버 카운터</p> <p>(i) 냉각을 생성하는 통합 시스템이 없고, 외부 공기 냉각 유닛에서 생성된 찬 공기를 덕트를 통해 공급받아 작동하는 직접 판매 기능 냉장 기기. 단, 이는 원격 캐비닛과 부속서 IV, 표 4에 정의된 범주 6의 냉장 자판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p> <p>(j) 코너형 캐비닛 / 곡선형 전면을 가진 진열장 및 회전식 캐비닛</p> <p>(k) 냉동 작동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자판기</p> <p>(l) 부서진 얼음이 있는 생선용 서브오버 진열장</p> <p>(m) Regulation (EU) 2015/1095에 정의된 전문 냉장 저장 캐비닛, 급속 냉각 캐비닛, 응축기 유닛 및 공정 냉각기</p> <p>(n) 와인 저장 기기 및 미니바</p>

○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규제원문 (2)의 3조 ~ 6조)

- ①공급자, ②판매자, ③인터넷 호스팅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공급자의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의무

[표 3] 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규제원문 (2)의 3조)

요구사항	내용	관련 규제원문
라벨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각 냉장 기기에 부속서 III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규제원문 (5)
제품 정보 시트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부속서 V에 규정된 제품 정보시트의 항목을 입력해야 함 - (판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쇄 형태로 제품 정보시트 제공	규제원문 (7)
기술 문서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부속서 VI에 규정된 기술 문서의 내용을 입력해야 함	규제원문 (8)
광고 및 홍보물 정보 제공	특정 모델에 대한 시각적 광고에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등급 범위를 부속서 VII에 따라 표시	규제원문 (9)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	특정 모델에 대한 기술 홍보자료나 기타 홍보자료에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등급 범위를 부속서 VII와 VIII에 따라 표시	규제원문 (9) 규제원문 (10)

요구사항	내용	관련 규제원문
전자 라벨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각 냉장 기기 모델에 대해, 판매자에게 부속서 III에 따라 제작된 전자 라벨을 제공	규제원문 (5)
전자 제품 정보 시트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각 냉장 기기 모델에 대해, 판매자에게 부속서 V에 따라 제작된 전자 제품 정보 시트를 제공	규제원문 (7)
에너지 효율 등급	부속서 II에 따라 계산된 에너지 효율 지수를 기반으로 정함	규제원문 (4)

② 판매자의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의무

[표 4]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규제원문 (2)의 4조)

요구사항	내용	관련 규제원문
라벨	판매 지점(무역 박람회를 포함)에서의 라벨을 부착 의무 - 직접판매 기능을 갖춘 각 냉장 기기는, 표 3의 라벨 요건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한 라벨을 부착 - 내장형 냉장 기기는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전시 - 그 외의 직접판매 기능 냉장 기기는 정면 또는 상단 외부에서 명확히 보이도록 라벨 부착	규제원문 (5)
원격 판매에서의 라벨링 및 정보 제공	부속서 VII 및 VII에 따라 라벨과 제품 정보시트를 제공해야 함	규제원문 (9) 규제원문 (10)
광고 및 홍보물 정보 제공	기술적 파라미터를 설명하는 자료에는 해당 모델의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상의 등급 범위를 부속서 VII 및 VII에 따라 포함해야 함	규제원문 (9) 규제원문 (10)

③ 인터넷 호스팅 플랫폼의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의무

[표 5]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규제원문 (2)의 5조)

내용	관련 규제원문
직접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본 기술 규정 부속서 VII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의 전자 에너지 라벨 및 전자 제품 정보 명세서를 표시해야 하며, 라벨과 명세서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규제원문 (10)

○ 그 외 본문 조항

- 검사/계산 방법은 부속서 IV*에 따라 시장감시 절차는 부속서 IX**에 명시한 절차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해당 규제원문을 참조

* 규제원문 (6)

** 규제원문 (11)

○ 에너지 효율 지수

- 부속서 II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지수는 Regulation (EU) 2019/2018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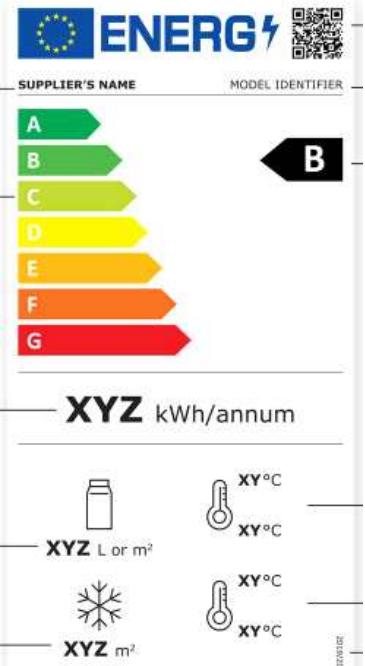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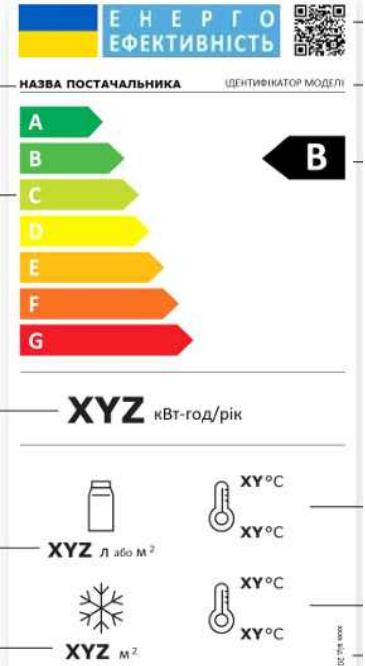
[표 6] 에너지 효율 지수 (부속서 II, 규제원문 (4)를 참조)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지수 (EEI)
A	10 미만
B	10 이상 20미만
C	2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50 미만
E	50 이상 65 미만
F	65 이상 80 미만
G	8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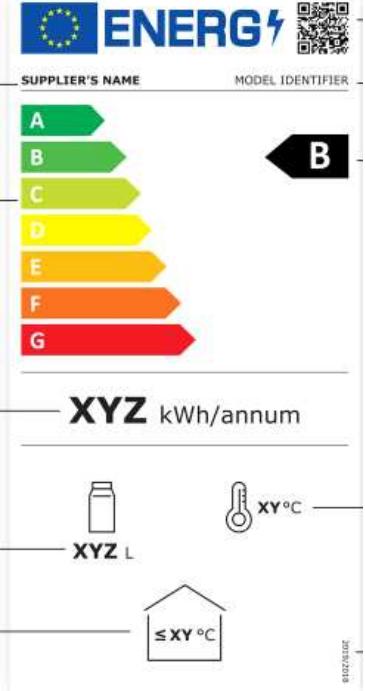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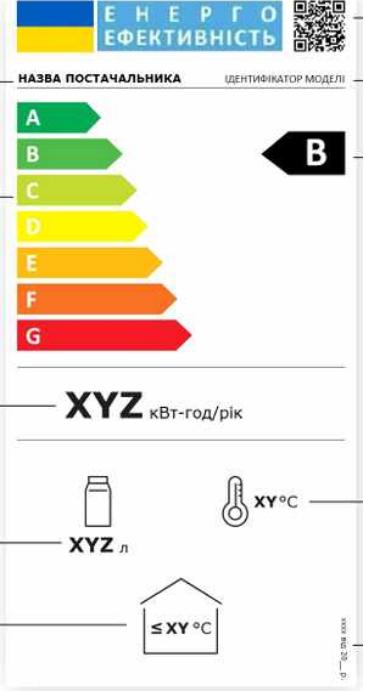
○ 에너지 효율 라벨 양식

- 에너지 효율 라벨 양식은 부속서 III에서 명시하며, 라벨의 내용과 형식은 국기 및 언어를 제외하고 Regulation (EU) 2019/2018와 동일함
- 라벨링에 포함하는 정보는 ①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음료 냉각기 및 아이스크림 냉동고 제외), ②음료 냉각기, ③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따라 다르며, 제품 종류별 라벨 예시는 다음 [표 7] ~ [표 9]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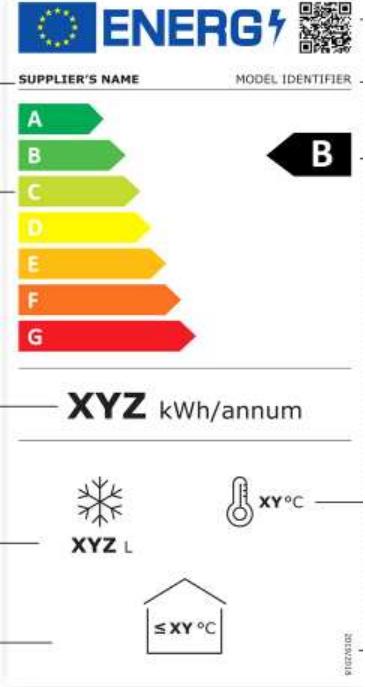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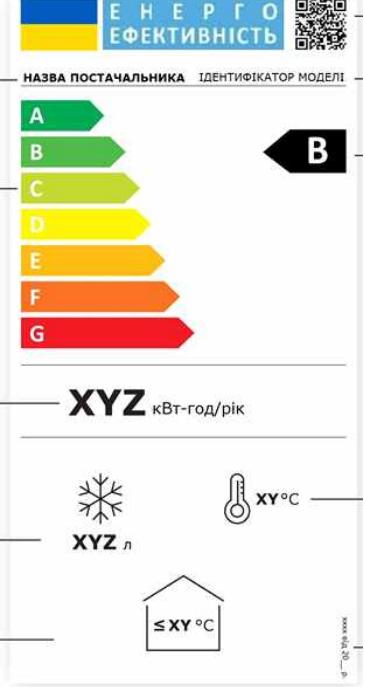
[표 7]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음료 냉각기 및 아이스크림 냉동고 제외)의 라벨

Regulation (EU) 2019/2018	본 제정안(부속서 III, 규제원문 (5)를 참조)
	

[표 8] 음료 냉각기의 라벨

Regulation (EU) 2019/2018	본 제정안(부속서 III, 규제원문 (5)를 참조)
 <p>ENERGY</p> <p>SUPPLIER'S NAME MODEL IDENTIFIER</p> <p>A B C D E F G</p> <p>XYZ kWh/ annum</p> <p>XYZ L</p> <p>≤ XY °C</p>	 <p>ЕНЕРГО ЕФЕКТИВНІСТЬ</p> <p>НАЗВА ПОСТАЧАЛЬНИКА ИДЕНТИФІКАТОР МОДЕЛІ</p> <p>A B C D E F G</p> <p>XYZ кВт·год/рік</p> <p>XYZ л</p> <p>≤ XY °C</p>

[표 9] 아이스크림 냉동고의 라벨

Regulation (EU) 2019/2018	본 제정안(부속서 III, 규제원문 (5)를 참조)
 <p>ENERGY</p> <p>SUPPLIER'S NAME MODEL IDENTIFIER</p> <p>A B C D E F G</p> <p>XYZ kWh/ annum</p> <p>XYZ L</p> <p>≤ XY °C</p>	 <p>ЕНЕРГО ЕФЕКТИВНІСТЬ</p> <p>НАЗВА ПОСТАЧАЛЬНИКА ИДЕНТИФІКАТОР МОДЕЛІ</p> <p>A B C D E F G</p> <p>XYZ кВт·год/рік</p> <p>XYZ л</p> <p>≤ XY °C</p>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법령 및 표준

- 본 기술 규정은 다음 유럽 연합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2018 ([URL](#))

불임

규제 참고자료

□ 규제원문 출처

- 우크리아니 지역사회영토개발부 고시 : [URL](#)